

# EU, 2001년 구제역 특별보고서

EU 감사국은 2001년 EU지역에 발생했던 구제역에 따른 EU 집행위원회의 대응조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국의 특별보고서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한 이 자료는 2001년도에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한 배경지식과 구제역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관점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1. 2001년 구제역 현황

2001년 2월에 전례 없었던 구제역(FMD)이라는 유행병이 EU 지역에 발병했다. 구제역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이후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갔다. 구제역으로 영국에서만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도살되었고, EU지역 전체의 피해 가축 규모는 400만 마리에 달했다. 집행위원회는 EU지역에 확산되어 가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인 시책을 펴 나갔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4개국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였다.

## 2. EU집행위원회 대처의 효과

EU 감사국은 집행위원회가 구제역이 발병한 EU 회원국들을 주축으로 긴급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한편, EU의 감시 하에 감염 우려가 있는 양들에 대한 도살정책을 감행했고 시장을 폐쇄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EU규정 범주 하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밝혔다. EU 감사국이 이번에 발표한 사실들은 2002년 12월 EU의회에서 채택된 조사 자료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구제역 발병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긴급한 조치들이 요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대처로 인해 EU 식품·가축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으며, 잠재적으로 고비용이 초래되는 시장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2001년 9월에는 남아있던 몇몇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박멸조치가 단행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후 몇 달 동안의 주의 관찰기관을 통해 새로이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02년 1월 EU는 다시 이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 3. 2001년도의 구제역 파동의 교훈

2001년부터 집행위원회는 수많은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구제역 발병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EU 법이 EU 농업장관(EU Agriculture Ministers)에 의해 2003년 9월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EU 이사회는 새로운 규정 하에 양과 염소에 대한 추적 장치 부착을 승인했고, 2003년부터는 EU로 반입되는 개인의 식품 수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4. 2001년 구제역 파동 소요 비용

구제역이 발병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의 4개 회원국은 총 27억 유로를 농민들의 보상금과 기타 구제역 처리 관련 조치에 사용하였고, 이중 16억 유로는 EU의 긴급가축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조달되었다. 그러나 EU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집행위원

회의 정밀조사와 감사 결과, 회원국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상당수 존재함을 밝혀냈다. 감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도 가축도살에 대한 보상금 중 10억 6,300만 유로가 과보상임이 밝혀졌으며 이 중 EU예산 4억 7,500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2001년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인해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EU의 식품 가축시장의 큰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다. 즉, EU가 시장개입조치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수십억 유로의 비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 5. 보고서의 시사점

감사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2001년 이전에 구제역 발병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즉, 구제역 발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EU와 회원국들의 시스템이 2001년 이전부터 이미 구제역 발병의 위험성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감사국은 각 회원국마다 농민들에 대한 구제역 피해 보상금 수준이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EU가 국가적 권위를 통한 좀 더 확실한 지시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국은 집행위원회에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유행병 발생 시의 자금운영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 6. 감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반응

집행위원회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신속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한 감사국의 평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좀

더 충분한 계획과 다른 EU 규정이 있었다면 구제역 파동이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2001년도에 준비되어 있던 계획과 시스템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축 서비스를 추구함으로써 발생한 구제역의 규모 문제이다.

## 7. 가축 유행병에 대한 EU 재정 규정 변화 전망

집행위원회는 EU의 긴급가축기금 규정에 대해 수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식의 제안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국이 요청한 국가 간 보상시스템의 일치는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동일한 가축일지라도 국가마다 다른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EU 수준에서 일정한 보상율을 책정하는 것은 각 국 농민들에게 적정치 못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현재 EU 법률(legislation)은 가축에 대한 보상가격을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의 각 국가마다의 시장가치로 정하고 있다.

감사국이 농민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존재하며 이는 EU 가축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건의 사항은 법률적으로 합당치 않다. 보상금과 범칙금은 EU 법 하에서 분리되어 다루어진다. 게다가 EU 가축기금은 각 국가의 개별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각 국 정부에 지급된다. 집행위원회는 개별 농민에게 지급되는 과정에는 관여치 않는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